



電氣事故

大法院 判例와 所見

Judicial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on the Electric Trouble and Its Views

朴鍾福

辯護士

1. 판결요지

감전위험이 큰 고압선 교체공사를 하는 자는 역송전의 가능성의 없음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수용가 자가발전 시설 등으로부터의 역송전의 위험에 대비하여 전기선로의 구분이나 접지시공 등으로써 역송전으로 인한 감전사고의 위험방지 조치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82. 6. 8.

82 다카 74 손해배상 판결)

2. 사건 개요

한국전력주식회사 제주지점 소속 전공인 소외방 고○○가 제주도립병원 근처에 있는 전주 위에서 고압선 교체공사를 하다가 그 병원의 자가용 발전기에서 송전선을 통하여 역류한 전기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건.

3. 문제의 소재

이러한 경우 위 피해자를 고용한 한국전력주식회사는 위 피해자 가족에게 위 사망사고로 인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나, 한편 그 배상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위 피해자에게 전기선로의 구분이나 접지시공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 상계의 법리에 의해 그 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할 것인 바, 과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인가의 여부.

4. 고등법원 판결

위 사건을 심리한 광주 고등법원에서는 한국전력 제주지점에서 공사 3일전에 공사로 인한 휴전사실을 제주 도립병원에 통고하는 등 근로자 안전관리 규정 제81조에 따른 위험방지 조치를 하였고, 위 피해자는 작업 현장에 배치된 안전관리자 소외 강○○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면서, 자가용 발전기에는 반드시 절환개폐기를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가용 발전기의 운전시 역송전이 되지 않으므로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전원쪽에서만 전기선로를 차단하고 위 병원쪽의

전선에 전기가 흐르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검사를 한 후 작업을 하다가 본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해자는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하고 안전수칙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하였으니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피해자가 그 당시 위 병원에 자가용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고, 설사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설치되어야 할 절환개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조치를 취할 주의 의무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5. 대법원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전기수용가 층에 비상용으로 자가용 발전기를 설치하고 한국전력주식회사로부터 송전이 중단될 때 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은 일반 공지의 사실이라 할 것이고, 자가용 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자가용 발전기에서 발전된 전기가 송전선을 통하여 역류하는 이른바 역송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환개폐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것이 설치되지 않을 수도 있고 설치된 경우에도 고장이나 조작의 잘못으로 인하여 역송전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안전작업수칙에도 오조작 및 자가용 발전기 운전으로 인한 역송전은 감전재해 요인의 하나로 들고 있다) 감전위험이 큰 고압선 교체공사를 하는 피해자로서는 가사 제주도립병원에 자가용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송전선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수용가 층에 자가용 발전기를 설치,

사용하는 수용가가 없거나 있더라도 역송전될 가능성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전기선로의 구분이나 접지시공 등 역송전으로 인한 잠전사고의 위험방지 조치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본건 사고 당시 비록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직접 고압선 교체작업을 하는 피해자 자신의 위와 같은 주의 의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이 아님은 사리상 당연하다 할 것이니,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조치가 특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이었다든가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는 따위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위 피해자가 만연히 안전관리자의 지시만을 따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역송전의 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본건 사고가 일어났다면, 본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위 광주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였다.

6. 맺음말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고압선 교체공사를 하면서 위와 같은 위험방지 조치를 게을리하다가 귀중한 생명을 잃고 후일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변호사 박종복 법률사무소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 1동 1705번지
정곡빌딩 서관 204호 (법원·검찰청문앞)
TEL : 536-6575, 4418, 7207~8
FAX : 536-4419